

법인·개인사업자의 기장, 신고, 재무 기능을 한 계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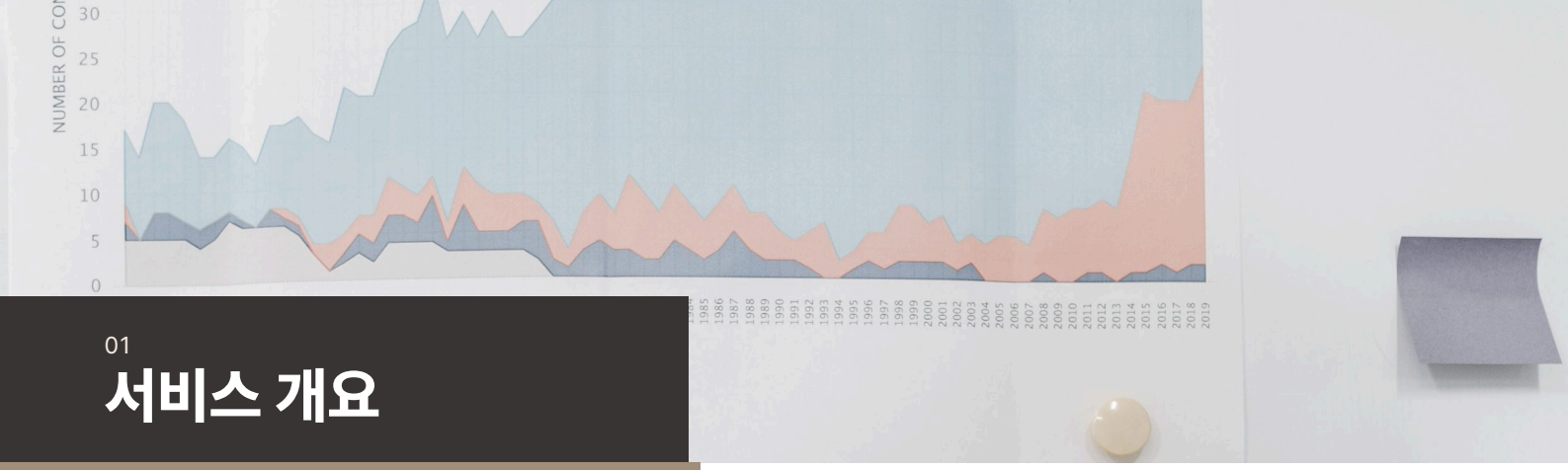
회계법인 리파인드

세무자문·기장대리·
CFO 아웃소싱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기장·신고 일정·재무 기능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조건

검토 결론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이고(법인세법 §112), 어기면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75의3).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48②2호).

계약 전 확인 항목 4개

1
사업자 유형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2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 기준 5억·7.5억·15억원

3
결산월
12월 결산 여부, 기한 일정표의 기준

4
세무대리 등록
수행자의 등록과 조정반 소속

이런 분께

- 기장을 외부에 맡기고 신고 일정까지 관리받고 싶은 법인 대표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며 기장 방식이 바뀌는 대표
- 매출이 늘어 성실신고확인 기준(5억~15억원)에 다가선 사업자
- 외부감사 대상 판정을 앞두고 재무 담당이 필요한 기업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현황 진단	사업자 유형, 결산월, 현재 기장 방식을 확인합니다. 간편장부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3억·1억5천만·7천5백만원), 성실신고확인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15억·7억5천만·5억원, 사업서비스업은 5억원)으로 판정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분은 뺍니다. 연중 누적 매출을 매월 추적합니다.
2 일정 설정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급명세서, 중간예납 기한을 결산월에 맞춰 일정표 한 장으로 만듭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신고 기한이 한 달 늦춰지는 대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월 운영	매월 증빙과 계정을 마감하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 전에 납부세액을 알려드립니다. 반기에는 중간예납을 직전 사업연도 방식과 가결산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합니다.
4 결산·점검	결산 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감면·공제와 최저한세를 적용한 실제 부담세액을 확정합니다. 신고 뒤에는 가산세 감면 기한 안에 바로잡을 항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02

서비스 구조와 신고 일정

기장, 신고, 반기 점검, 결산의 월별 순서

이 서비스는 월 기장, 정기 신고, 반기 점검, 결산을 함께 관리합니다. 기한은 사업자 유형과 결산월로 정해지고 한 번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약 후 첫 작업은 일정 설정입니다. 아래 도해는 12월 결산 법인 기준입니다.

도해 1. 월 기장에서 법인세 신고까지(12월 결산)

월 기장
증빙·계정 마감, 복식부기

→

원천세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

결산·법인세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3개월(성실신고확인 4개월), 중간예납 6+2개월

기장 대행과 신고 대리는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세무사법 §2는 신고 대리(1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2호), 장부 작성 대행(3호), 상담·자문(4호), 조사 단계 의견진술 대리(5호), 성실신고 확인(8호)을 호별로 나눠 둡니다. 위임 범위를 호 단위로 정하면 빠지는 업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세무사법 §2, §20①, §20의2①, 법인세법 §60⑤·⑨

도해 2. 신고·납부 기한과 놓쳤을 때

12월 결산 법인과 12월 31일 과세기간 개인 기준입니다.

구분	기한과 근거	놓쳤을 때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3개월, 지방소득세 4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5개월). 감사 미종결 외부감사 법인은 1개월 범위 연장 신청, 이자 가산 (법인세법 §60①⑦⑧, 지방세법 §103의23①)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는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60⑤). 무신고는 납부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 §47의2)
중간예납(법인)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12월 결산은 8월 31일 (법인세법 §63②③)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47의4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3월분·7~9월분이 끝난 후 25일,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부가가치세법 §48①, §49①)	확정 무신고는 20%와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2, §47의4). 예정고지 50%는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48③④, 시행령 §90⑥)
원천세·지급명세서	원천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 2월 말, 근로·퇴직·사업소득 3월 10일, 일용근로 다음 달 말일 (소득세법 §128①, §164①)	원천세는 미납세액 3%에 일수별 이자를 더하고 합계 10% 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47의5①).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지급금액 1%, 일용근로·간이는 0.25% (소득세법 §81의11①)
종합소득세(개인)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중간예납은 11월 30일 (소득세법 §70①, §70의2②, §65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70④)

결산월이 12월이 아니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계약 후 첫 주에 사업자별 일정표로 다시 확정합니다.



03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확인하지 않고 맡기면 기한을 놓치거나 세액이 달라지는 항목

1 기장 방식 구분

법인은 모두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법인세법 §112). 개인사업자는 신규 개시 사업자와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1억5천만·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160, 시행령 §208⑤). 다만 의료업·수의업·약국업과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70④).

근거: 소득세법 §160①③, §70④, 시행령 §208⑤·§147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②7호, 법인세법 §112

2 성실신고 대상 여부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15억·7억5천만·5억원 이상이면 확인서를 내고 신고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늦춰집니다. 사업서비스업은 5억원입니다(소득세법 §70의2, 시행령 §133①).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 시행령이 정한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던 개인이 전환한 뒤 3년 이내의 법인과 그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대상이고 기한은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법인세법 §60의2, §60①).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3개월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70의2, 시행령 §133, 법인세법 §60①, §60의2

3 세무대리 등록과 조정반

세무대리는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세무사법 §20①, §20의2①1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등 7개 유형은 조정반 소속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법인세법 §60⑨, 시행령 §97의2①1호·2호). 개인은 시행령이 정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입니다(소득세법 §70⑥). 수행자의 등록과 조정반 소속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근거: 세무사법 §20①, §20의2①, 법인세법 §60⑨, 시행령 §97의2, 소득세법 §70⑥

4 중간예납 계산 방식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기준 중 선택합니다(법인세법 §63의2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가결산 기준만 가능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63①2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 8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63의2②1호). 상반기 실적이 나빠 가결산 방식의 세액이 더 작다면 8월 31일 전에 가결산으로 납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63①②③, §63의2①②

5 감면·공제와 최저한세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입니다(§132①4호). 최저한세 대상으로 열거된 감면·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모자라면 그 부분은 그 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7 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24)는 같은 과세연도에 하나만 선택합니다(§127④).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는 대상이 아닙니다(§132①3호).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7%이고 처음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3년간 8%, 이후 2년간 9%입니다. 세액공제 미공제분은 10년간 이월되지만(§144①) §7 감면은 이월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7①, §127④, §132①, §144①

6 신고를 놓쳤을 때의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입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0.14%)와 비교해 큰 금액을 냅니다(국세기본법 §47의2①②). 수입금액 20억원인 법인이 결손으로 무신고해도 140만원입니다. 법인세법 §75의3의 장부 가산세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합니다(§47의2⑥).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합니다. 수정신고(과소신고분)는 1개월 이내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입니다(§48②).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에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47의2①②⑥, §47의4①, §48②



04

판정 순서와 연간 일정

유형 판정, 일정표, 중간예납, 결산 순서입니다

도해 3. 12월 결산 법인의 연간 일정

매월 10일·말일
원천세 10일(직전 연도 상시고용 20명 이하 등 승인받은 경우 반기 말 다음 달 10일), 간이지급명세서 말일 (소득세법 §128①②, §164의3①, 시행령 §186①). 근로소득분 가산세는 2027.1.1 시행 (§81의11)

1·4·7·10월 25일
확정 1·7월, 예정 4·10월. 개인과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50% 고지 (부가가치세법 §48①③, 시행령 §90④)

2월 말·3월 10일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2월 말, 근로·퇴직·사업소득 3월 10일, 일용근로 다음 달 말일 (소득세법 §164①)

3월 31일·4월 30일
법인세 3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각각 4월 30일, 5월 31일 (법인세법 §60①, 지방세법 §103의23①)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법인세법 §63②③)

도해 4. 판정 순서

확인 순서	판정과 결과
1 기장 방식 구분	법인은 복식부기(법인세법 §112). 개인은 신규 개시 여부와 직전 수입금액(3억·1억5천만·7천5백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판정합니다.
2 성실신고 대상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7억5천만·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 신고와 확인서. 법인은 임대업 주업 등이거나 성실신고확인 개인이 전환한 지 3년 이내이면 신고 4개월,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확인서 없이 3개월.
3 세무대리 등록·조정반	수행자의 세무대리 등록과 조정반 소속을 확인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외부감사법 §4①, 시행령 §5①)이면 조정반 소속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97의2①1호).
4 중간예납 방식	상반기 가결산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을 각각 계산하고 8월 31일 전에 선택합니다 (법인세법 §63의2①).
5 감면·공제·한도	특별세액감면 판정, 감면·공제 중복 배제(§127④), 최저한세 검증, 세액공제 이월 순으로 확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7, §127, §132, §144).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중소기업 3,600만원(12개월)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의 0.3%를 더하고 수입금액 30억원이면 4,500만원입니다 (법인세법 §25④).
6 가산세와 기한	도해 2·3의 일정으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놓치면 무신고 20%가 붙고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국세기본법 §47의2, §48).

보수

보수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견적은 사업자 유형, 월 거래 건수, 신고 대상 세목, 재무 책임자 기능의 범위(자금 보고, 감사인 요청자료 대응)에 따라 정해집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기장만 맡기면 세무조정과 신고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2는 신고 대리(1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2호), 장부 작성 대행(3호), 상담·자문(4호)을 별개의 호로 둡니다. 위임 범위를 호 단위로 정하면 빠지는 업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는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으므로(§20①) 수행자의 등록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등 7개 유형은 조정반 소속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60⑨, 시행령 §97의2①).

세무사법 §2, §20①, 법인세법 §60⑨, 시행령 §97의2

Q2. 외부감사 대상이면 기장은 누가 맡나요?

주권상장법인과 상장하려는 회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4①1호·2호). 그 밖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4①3호, 시행령 §5①).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합니다(§10②). 감사 계약 기간 중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는 그 회사의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 임원급 의사결정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공인회계사법 §21②1호·3호·9호). 감사 대상에 가까우면 감사인과 기장 수행자를 계약 전에 나눠 정합니다.

외부감사법 §4①, §10②, 시행령 §5①, 공인회계사법 §21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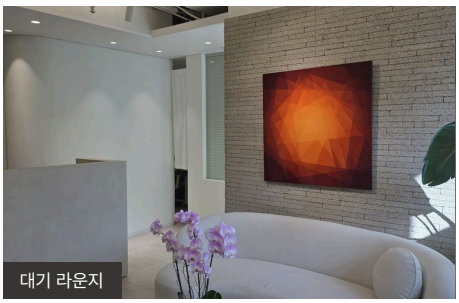
Q3. 특별세액감면을 받는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을 제외한 감면 업종의 소기업은 감면율이 수도권 밖 30%, 수도권 20%이고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원씩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7①1호~3호). 본점이 수도권이면 모든 사업장에 수도권 비율을 씁니다. 다만 최저한세가 있습니다. 수도권 밖 소기업 제조업의 산출세액이 8,000만원(과세표준 5억원, 법인세법 §55①)일 때 특별세액감면 2,400만원(30%)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3,600만원(가정치)을 받으면 남는 세액은 2,000만원입니다. 최저한세는 손금산입·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 5억원의 7%인 3,500만원이어서 1,500만원은 그 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132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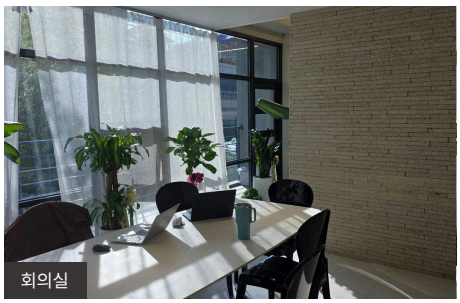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7①, §24, §29의8, §127④, §132①, 법인세법 §55①

담당 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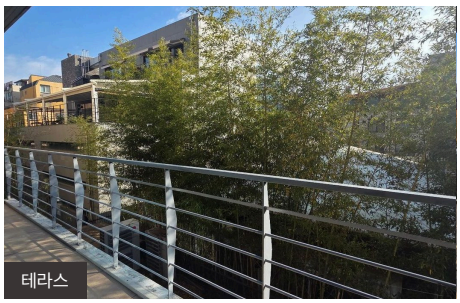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세무법인 엑스퍼트 소속)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대기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